

“B.E.2522(1979)

식품법”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재위 34 년째인

1979년 5월 8일자로

제정됨

푸미폰 국왕은 왕명으로 식품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적절하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의회의 역할을 하는 "국가입법의회"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제정할 것을 정중히 명령한다.

제1조 본 법은 “B.E.2522(1979) 식품법”이라고 부른다.

제2조¹⁾. 본 법은 관보에 공포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다음 사항을 폐기한다.

(1) B.E. 2507(1964) “식품 품질 관리법”

(2) B.E. 2515(1972) 1월 18일자 “시행위 고시 제 49 호”

이 법 내에서 규정한 다른 규정, 규칙 및 조항 또는 이 법의 내용과 모순되는
규정들은 본 법으로 대체하여 시행한다.

제4조 본 법에서,

“식품”이란 음식 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어떤 수단이나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먹거나 마시거나 체내에 섭취하는 모든
종류의 물질. 그러나 법으로 금지되는 향정신성 물질이나 마약은 제외한다.

(2) 식품 첨가물, 착색료 및 향미제를 포함하여 식품 생산의 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물질.

“구체적 통제식품”이란 장관이 품질이나 기준을 관리하는 식품으로 관보에 고시한
식품을 의미한다.

“레시피”란 식재료로 사용되는 성분의 목록으로서 각 품목의 중량이나 부피를
특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용기”란 식품을 집어넣거나 싸거나 다른 방식으로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물체를 의미한다.

“라벨”이란 식품, 식품용기, 또는 식품용기의 포장에 표시된 그림, 마크 또는
문구를 의미한다.

“생산하다”란 만들고 혼합하고 가공하고 또한 나누어 담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하다”란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기, 배포하기, 제공하기 또는 교환하거나
배포를 위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1) 1979년 5월 13일의 관보 제96권/제79편/특별호 1쪽:B.E.2522(1979)

"수입하다"란 국내로 가져오거나 주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하다"란 국내로부터 가져가거나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공장"이란 생산을 위해 설립한 공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의미한다.

"허가받은 자"란 본 법에 따른 허가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법인이 허가받은 자인 경우에 이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임명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허가권자"란 식품의약품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청장이 선임한 사람을 의미한다.

"위원회"란 식품 위원회를 의미한다.

"담당 관리자"란 본 법의 집행을 위해 장관이 임명한 사람을 의미한다.

"장관"이란 본 법의 집행에 대한 책임과 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들을 의미한다.

제5조. 보건부장관은 본 법의 집행에 대한 책임과 감독 권한을 가지며 담당 관리자를 임명하고, 본 법의 최종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규정하는 보건부령을 발령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타 업무를 고시를 통해 지정한다. 이 모든 것은 본 법에 따라 시행하기 위함이다.

해당 부령과 고시는 관보에 공표되면 발효될 수 있다.

제6조. 식품 관리의 용이를 위해 장관은 관고에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구체적 통제식품을 결정.

(2) 구체적 통제식품을 이름, 유형, 종류, 또는 특징에 따라 규정, 요건, 판매를 위한 생산방법, 판매를 위한 수입 방법, 판매에 이르기까지 품질 또는 표준을 결정.

(3) (1)에서 말한 것이 아닌 식품의 품질 또는 표준을 정하고 규정, 요건, 매를 위한 생산방법, 판매를 위한 수입 방법, 판매에 이르기까지 품질 또는 표준을 결정.

(4) 판매용으로 생산하는 식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또는 판매하는 식품의 이름, 범주, 종류 또는 성질에 따라 착색료 착향, 감미료를 포함하여 식품 혼합 성분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비율을 결정.

(5) 판매용으로 생산하는 식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또는 판매하는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 방부제 사용, 그리고 부패방지, 색 혼합 등의 규정과 요건, 방법 결정.

(6) 어떤 물질을 식품용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장의 품질이나 표준 및 용기의 사용을 결정.

(7) 판매용으로 생산하는 식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또는 판매하는 식품을 본 법에 따른 불량식품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생산 및 보관에서 생산 방법, 장비 및 도구를 결정.

(8) 생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을 결정.

(9) 참조 문서를 포함하여 식품을 검사, 샘플링, 압수, 압류 및 학술적 분석에 대한 규칙, 조건 및 절차를 결정.

(10) 판매용으로 생산하는 식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또는 폐기하는 식품의 유형 및 범주를 결정. 여기에는 라벨에 광고하는 방법은 물론 라벨, 라벨의 문구, 상태 및 라벨표기 방법이 포함된다.

제1장 식품위원회

제7조. "식품위원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공중보건부 차관을 두고, 대표 장관이 임명한 9명 이하의 유자격 위원과 함께 직권 위원으로서 식품의약품청장, 보건부의 장 또는 대리인, 의료부의 장 또는 대리인, 질병관리부의 장 또는 대리인, 의료과학부의 장 또는 대리인, "과학부"의 장 또는 대리인, "국내 무역부"의 장 또는 대리인, 관세청 청장 또는 대리인, 국방부 대리인, 농업협동부 대리인, 총리실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식품의 생산, 수입, 판매와 관련된 기업들의 대리인 4명 이하를 권위권자로 임명한다.

식품의약품청 부청장을 위원이자 간사로, 식품관리국 국장을 위원이자 보조간사로 한다.

제8조.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장관 또는 허가권자에게 조언, 의견을 제공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1) 제6조에 따른 고시의 발령.
- (2) 제19조에 따른 재심판결.
- (3) 제39조에 따른 식품레시피 등록의 취소.
- (4) 제44조에 따른 시행.
- (5) 제46조에 따른 허가증 사용 정지 또는 철회.

제9조. 장관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될 수도 있다.

제10조. 제 9조에 따른 임기 만료 외, 장관이 임명한 위원은 아래 사유에 의해 사임한다.

- (1) 사망
- (2) 사임
- (3) 파산
- (4) 금치산자 혹은 금치산자에 가까운 상태의 준 금치산자의 경우
- (5)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 과실이나 경범죄로 저지른 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원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궐위된 경우에 장관은 그 위원을 교체할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된 위원은 교체된 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한다.

장관이 이전에 임명된 위원이 재임하는 중에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는 경우에 위원으로 추가 임명된 자는 재직 중인 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는 정족수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위원회 의장이 회의 중에 부재하거나 자리를 비운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의 의장을 맡을 위원을 선출한다.

회의에서의 결정은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위원 1명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득표가 같으면 회의의 의장은 의장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 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한대로 수행할 소위원회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제 11 조의 규정은 소위원회 회의에 준용한다.

제13조. 본 법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서 위원회는 서면으로 어떤 사람을 소환하여 진술하도록 명령할 권한과 관련 문서나 증거 또는 고려할 사항을 보낼 권한을 가진다.

제2장. 허가서 신청 및 발급

제14조. 허가가 없는 한 누구도 판매용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 할 수 없다. 사용 허가의 신청 및 사용 허가의 허여는 보건부령에서 정한 규칙, 방법, 조건을 준수한다.

제15조.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판매용 식품을 수입할 수 없다. 허가서 신청 및 허가는 보건부령에서 정한 규칙, 방법, 조건을 준수한다.

제16조. 제14조 및 제15조의 조항은 아래의 사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1) 허가권자로부터 임시 허가서를 받아 특정 기간 식품의 생산 또는 수입.

(2) 주문 구매 시의 판단을 위해 혹은 식품 레시피 등록을 위해 샘플용으로 식품을 생산, 수입, 수출하는 경우.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자는 보건부령에 규정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한다.

제17조. 제14조 및 제16조 제 (1) 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서에는 허가받은 자의 직원이나 대리인도 포함된다.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허가받은 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의 행위는 허가받은 자가 당해 행위를 알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없는 한 허가받은 자의 행위로 본다.

제18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허가서는 허가를 받은 해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서를 갱신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허가서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상기 신청서가 제출되면 허가권자가 허가서 갱신을 불허한다고 명령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허가서 갱신 신청 및 허가는 보건부령에서 정한 규칙, 절차, 조건을 준수한다.

제19조. 허가권자가 허가서 발급이나 기한 연장, 식품생산지·수입 장소·보관 장소 이전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허가서 신청자, 연장 신청자, 장소 이전 신청자는 허가권자로부터 해당 신청의 불허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관의 판결문이 가장 최종적이다.

장관이 판결문을 내기 전에 허가권자가 허가서 갱신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항소인의 요청이 있는 한 일시적인 사업 운영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다.

제3장. 식품 관련 허가받은 자의 의무

제20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허가서에 명시된 장소 밖에서 식품을 생산, 수입 또는 보관할 수 없다.

제21조 모든 허가받은 자는 허가권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식품의 생산, 수입 또는 보관 장소의 이동을 금지한다.

허가 신청 및 허가는 보건부령에 규정 된 규칙, 방법 및 조건을 준수한다.

제22조 허가서나 식품 레시피 등록증이 분실 또는 파기된 경우, 허가받은 자는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 손실이나 파기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체 허가증이나 대체 레시피 등록증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대체 허가증이나 대체 레시피 등록증 신청 및 발부는 보건부령에 규정 된 규칙, 방법 및 조건을 준수한다.

제23조 허가받은 자는 허가증에 명시된 식품 생산지나 식품 수입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허가증이나 대체 허가증을 표시하며, 건물의 외부에 허가된 생산 현장이나 허가된 식품 수입지라는 간판을 배치하거나 마련한다.

제24조 수출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일시적으로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 구체적 통제식품을 생산하는 허가받은 자가 외국의 표준이나 국제 표준(장관이 제6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질이나 표준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다)에 따라 구체적 통제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장관은 제6조에 따라 고시하고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식품 관리

제25조. 누구도 아래의 식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없다.

- (1) 불량식품
- (2) 가짜 식품
- (3)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 (4) 그 외 장관이 지정한 식품.

제26조.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는 식품은 불량식품으로 본다.

(1)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2) 식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비율로 화학성분 또는 화학물질이 혼합된 식품으로, 제작 과정에 필요하여 담당 관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혼합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비위생적으로 생산, 포장 또는 저장되는 식품.
- (4)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감염된 동물로부터 생산된 식품.
- (5)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식품 용기에 들어있는 식품

제27조. 아래에서 설명한 식품은 가짜 식품으로 본다.

(1)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거나 중요한 성분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분류해내 진짜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그 진짜 식품명을 사용하는 식품.

- (2) 모조 식품을 생산해서 진짜 식품으로 판매하는 물질이나 식품.

(3) 식품의 결함이나 열등한 품질을 감추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혼합하거나 조합해 낸 식품.

(4) 구매자로 하여금 품질, 수량, 이점이나 기타의 특성을 잘못 믿게 하거나 생산지 및 생산 국가에 대해 잘못 믿도록 구매자를 기만하거나 속이도록 표시된 식품.

(5) 분석 결과에 대해 제6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장관이 규정한 품질이나 표준에 따라 생산되지 않고 성분이 영양가의 면에서 최저치나 최고치에서 30%가 부족 또는 초과함을 보여주거나, 또는 지정된 품질이나 표준과 달라 위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

제28조.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이란 제6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장관이 규정한 품질이나 표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27 조 제4항에 규정한 크기가 아닌 식품이다.

제29조.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25조 제(4)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1)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식품 또는
- (2) 신뢰할 수 없는 효능을 보유하거나 또는
- (3) 신체에 부적절한 가치 또는 영향을 미치는 식품.

제30조. 올바른 위생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위해성이 없도록 식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식품의약품청은 다음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

(1) 허가받은 자에게 식품 생산이나 수입에 대한 서면 명령을 발하여 식품 생산이나 식품 보관의 장소를 조정 및 수정케 한다.

(2) 테스트 결과로 소비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허가되지 않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자제하라고 명령한다.

(3) 식품 검사 결과 26조에 따른 불량식품으로 밝혀진 경우, 혹은 27조에 따른 가짜 식품, 28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위해할 수 있는 식품, 식품용기로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든 용기로 밝혀진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민이 알도록 고지하며 다음의 내용을 함께 밝힌다.

(A) 생산자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이름과 식품의 종류, 성질 또는 그 용기를 명시한다. 해당 식품이나 용기에 생산이나 수입 상업명이나 회차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그것 또한 밝힌다.

(B) 생산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판매자가 나타나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이나 용기의 종류와 특징과 함께 판매자의 이름과 판매장소도 함께 밝히도록 한다.

제4장. 식품 등록 및 광고

제31조. 제14조나 제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구체적 통제식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려고 할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우선 식품 레시피 등록을 요청해야 하고 식품 레시피 등록을 받고나서 생산이나 수입을 할 수 있다.

식품 레시피 등록증 신청 및 발급은 보건부령에서 규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따른다.

제32조. 제6조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경우, 장관이 정한 날짜 이전에 구체적 통제식품을 생산하는 제14조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제31조에 따라 식품 레시피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허가권자가 적당하다고 보는 기한 내에 임시로 생산을 계속하도록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제33조. 제 6조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경우, 장관이 정한 날짜 이전에 구체적 통제식품을 생산하는 제15조에 따른 허가받은 자는 제31조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식품을 가지고 식품 레시피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그 기간을 유예하게 늘려줄 수 있다.

제34조. 구체적 통제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된 레시피에 따라 구체적 통제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다.

제35조. 제31조에 따른 식품 레시피 등록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나타낸다.

- (1) 식품명
- (2) 식품의 성분이 되는 물질의 이름과 양
- (3) 용기 크기
- (4) 라벨
- (5) 생산자명과 생산지명
- (6) 정부 기관이나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의 식품 분석 결과
- (7) 식품 레시피 등록과 관련한 기타 항목

제36조. 식품 레시피 등록 사항 수정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식품 레시피 수정 신청과 식품 레시피의 수정 허가는 보건부령에서 정한 규칙, 방법 및 조건에 따른다.

제37조. 식품 레시피 등록증은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식품 레시피가 취소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 필요한 경우, 식품 관리의 용이를 위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권자는 등록된 식품 레시피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또는 소비하기에 안전하도록 수정하라고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39조. 식품 레시피를 등록한 어떤 식품이, 후에 등록한 레시피와 세부사항이 맞지 않거나 제27조에 따른 가짜 식품이거나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거나 제38조에 의거한 식품 레시피 수정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장관은 해당 식품 레시피 등록에 대한 철회 명령을 할 권한이 있고, 철회는 정부 관보에 고시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장관의 명령이 가장 최종적이다.

제40조. 속이려는 의도로 식품의 거짓된 효능, 품질, 효과를 광고해서는 안된다.

제41조. 무선 라디오, 텔레비전 상영, 영상, 신문이나 기타의 출판물,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기타의 수단을 통해 식품의 효능, 품질 또는 속성을 광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오디오, 이미지, 영상 또는 텍스트를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되면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2조. 허가권자는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서면으로 명령할 수 있다.

(1) 식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 또는 광고자에 대해 제41조에 해당하는 광고임이 분명한 식품에 대한 공고를 중단하도록 한다.

(2) 식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 또는 광고자에 대해 위원회가 광고상의 효능, 품질, 효과가 없는 식품이라고 판단한 식품을 생산, 수입, 판매, 광고를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제6장 담당 관리자

제43조. 담당 관리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수입업체 또는 식품 수입을 허가 받은 자의 건물은 물론 제조업체, 보관업체, 유통 업체의 식품 생산, 식품 보관, 식품 유통 위치나 건물을 입력하고 영업시간 동안 점검하고 본 법의 준수를 확인한다.

(2) 본 법에 따른 위법 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식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나 차량에 들어가서 식품을 검사하고, 위법 행위와 관련된 식품과 기구는 물론, 당해 식품과 관련된 식품 용기나 포장 및 문서를 압류하거나 몰수한다.

(3) 시험 또는 분석을 위한 샘플로 적절한 양의 식품을 취한다.

(4) 검증을 위해 공중 보건이나 위생에 유해할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이나 용기를 압류하거나 몰수한다.

(5) 공중 보건 또는 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거나 제6조 제(6)항에 따라 장관이 규정한 품질이나 표준을 따르지 않는 불량식품, 가짜 식품 또는 표준 이하의 식품이나 용기를 압수하거나 몰수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가받은 자나 그 관련자는 합당한 편의를 도모한다.

제44조. 식품 또는 용기 압류 또는 담당 관리자에 의해 압류 또는 몰수되거나 관할 공무원이 제26 조에 따른 불량식품, 제27조에 따른 가짜 식품, 또는 제28조에 따른 표준 이하의 식품, 또는 제28조 제(4)항에 따라 장관이 규정한 식품, 또는 공중 보건이나 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용기, 또는 장관이 제6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부적절한 품질이나 표준의 외관을 보이는 용기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폐기 명령을 내리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수행한다.

제45조. 의무 이행 시에 관할 공무원은 허가받은 자나 그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한다.

담당 관리자의 신분증은 보건부령에 규정한 형식이어야 한다.

제7장 허가서 사용 일시정지와 허가서 철회

제46조. 허가받은 자가 현행법, 본 법에 따라 발령된 보건부령 이나 고시, 보건부령 또는 본 법에 의거한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허가권자에게 보이는 경우 또는 허가받은 자가 생산하는 식품이 제26조에 따른 불량 식품, 제27조에 따른 가짜 식품, 제28조에 따른 표준 이하의 식품, 위생 또는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는 식품이나 포장인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회 120 일 이하의 기간 동안 사용 허가서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허가받은 자가 본 법에 따른 범죄로 법원에 기소된 경우에, 허가서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정지된다.

허가받은 자가 제26조 또는 제 27조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허가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허가서 사용 정지 명령 및 허가서 철회 명령은 허가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허가받은 자를 찾을 수 없거나 허가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은 공개된다. 생산 현장, 수입 현장, 판매 장소 또는 허가받은 자의 사무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 노출되고, 명령이 노출된 이후로 허가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서가 정지되거나 철회된 허가받은 자는 명령을 안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장관에게 항소할 권리가 가진다. 장관은 항소를 기각하거나 항소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허가권자의 명령을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장관의 판결이 가장 최종적이다.

제4항에 따른 장관에 대한 명령의 항소는 허가서 정지 명령이나 철회 명령의 집행을 유지하지 않는다.

허가서 정지나 철회 중에 판매하기 위해 관리 식품을 국내 생산, 수입 또는 주문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제14조 제1항이나 제 15 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8장 처벌 규정

제47조. 제6조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령된 공고를 위반하는 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제6조 제(6)항에 따라 발령된 공고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49조. 제6조 제(7)항에 따라 발령된 고시를 위반하는 자는 1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제6조 제(8)항에 따라 발령된 공고를 위반하는 자는 6개월 내지 2년의 징역과 5천 내지 2만 바트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제6조 제(10)항에 따라 발령된 공고를 위반하는 자는 3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4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돕지 않는 자는 1개월 초과 징역 또는 천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53조.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54조. 제16조 제1항에 따라 허가서를 받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식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보건부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5천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허가받은 자는 5,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제22조 제1항 또는 제23조를 위반한 허가받은 자는 1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국외 수출용으로 생산된 구체적 통제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허가받은 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과 3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59조.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6개월 내지 10년의 징역과 5천 바트 내지 1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제24조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62조. 제30조 제(1) 항에 따라 내린 허가권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허가받은 자는 1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 제30조 제(2)항에 따라 내린 허가권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당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동안 내내 5만 바트 이하의 벌금(1일 500바트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 허가받은 자가 제31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65조. 제31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 통제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1천 바트 내지 1만 바트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 제34조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67조. 제36조를 위반한 허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68조. 제38조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허가받은 자는 당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동안 하루당 500바트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장관이 제39조에 따른 식품 레시피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령한 식품을 생산한 자, 판매용으로 수입한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70조. 제40조를 위반한 식품을 광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71조. 제41조를 위반한 자는 5,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제42조에 따라 내려진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하되, 해당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동안 벌금을 부과하며 내내 1일 500바트 이상 1000바트 이하의 벌금이다.

제73조. 제48조, 제40조, 제48조, 제49조, 제60조, 제6 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위반이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로 판매하는 행위인 경우, 당해 범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이전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 다른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에 처한다.

제74조.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허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허가받은 자는 허가가 만료된 전 기간 동안 1일당 500바트 이상 1,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본 법에 따라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임시규정

제76조. 본 법이 발효되기 전에 식품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서는 해당 허가서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허가받은 자가 계속 운영을 원하고 사업 운영을 위해 본 법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규

허가서를 얻거나 허가서를 불승인한다는 통지를 받는 날까지 원래의 사용 허가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신규 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허가받은 자는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본 법을 준수한다.

제77조. 허가한 식품의 세부 사항에 대한 허가서와 본 법이 발효되기 전에 식품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라벨은 본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간 지속한다.

제78조. 본 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온 자는 본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한다.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허가서를 받거나 허가권자가 불허가를 통지하는 날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왕명 이행자
씨. 로드라깃
부총리

수수료

- (1) 식품 생산 허가서--- 1부당 10,000바트
- (2) 식품 수입 및 해외주문허가서 --- 1부당 20,000바트
- (3) 단기 식품 생산 허가서 --- 1부당 2,000바트
- (4) 단기 식품 수입 및 해외주문허가서 --- 1부당 2,000바트
- (5) 식품 레시피 등록증 --- 1부당 5,000바트
- (6) 대체 허가증 --- 1부당 500바트
- (7) 레시피 대체등록증 --- 1부당 500바트
- (8) 허가증 기한 연장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각 허가서의 한부당 수수료와 같다.

주의: 본 법을 공포하는 이유는 현재 식품 품질 관리법이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강력한 소비자 안전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적절하게 개조해야 하므로 본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왕실 법령은 'B.E. 2545 B.E. 25452 부처(部處) 및 국(局) 개편 법,'에 따른 정부 기관의 권한 및 의무의 이양에 맞추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²⁾

본 왕실 법령 제2조는 관보에 공표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128조. B.E. 2422 (1979) 식품법에서 “전염병 관리부 장”은 “질병관리부 장”으로 표기한다.

주의: 본 왕실 법령을 공포하는 이유는 “B.E. 2544 (2001) 부처(部處) 개편 법”이 왕실 법령에 의해 새로운 사명을 가진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하여 정부 기관의 행정 업무 및 의무를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의 정부 기관에서 직책을 맡은 장관이나 의무를 수행하는 자는 새로운 정부 기관에 속하며, 이양되는 권한과 의무에 따라 다양한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므로 당 법률과 왕실 법령에서 보여주는 원칙을 승인한다.

따라서 권한과 의무의 이양에 관한 법률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관련 당사자가 당 법률의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의 이전과 일치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모든 법률이, 법률의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이미 정부 기관, 장관, 직책 보유자, 또는 정부 기관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칭을 변경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권한과 의무의 이양에 맞추어 이전 법률에 따른 정부 기관이나 책임자의 임무 이양을 완료하였다.

또한 당 법령과 왕실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된 전(前) 정부의 부문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정부 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정부 기관에 속하도록 이양된 임무를 충족하기 위해 위원회에 정부 기관들의 대표를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건부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폰피문/수정
2002년 2월 11일
빠린씨니/수정
와싌/검토
2010년 10월 28일

2) B.E.2544년 10월 8일의 관보 제 119권/제102편/66쪽